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0835

발의연월일: 2025. 6. 13.

발 의 자:최형두·서천호·송석준

김예지 • 최수진 • 김승수

김상훈 · 신성범 · 서범수

윤영석 · 엄태영 · 이준석

김장겸 • 박성민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비대면 소비 경향이 가속화되면서 지역 상권은 소비자 유입 감소와 높은 마케팅 비용으로 생존 위기에 직면하고 있음. 이를 극복 하려면 지역상품의 가치를 효과적으로 알리고 소비자와 직접 연결할 수 있는 지역 기반 상품 홍보·판매 채널이 소상공인에게 필요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1년부터 2025년 6월까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지역채널을 활용해 지역 소상공인 등의 상품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규제 실증 특례를 시행 중이며, 지역상품의 인지도 향상과 매출 증대라는 긍정적인 성과를 확인하였음. 지역채널이 지역상품의 판로를 확대하고 주민과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핵심 플랫폼으로 자리 잡기 위해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함.

이에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지역채널에서 지역 소상공인 및 중소기

업의 상품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편성하고 송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안정적인 발전을 이루고자 함(안 제70조제4항 단서 신설 등).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등이 생산·판매하는 지역상품(이하 "지역상품"이라 한다)의 소개와 판매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편성하여 지역채널에서 송신할 수 있다.

① 제4항 단서에 따른 지역상품의 생산·판매자의 범위와 지역상품의 소개와 판매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의 제작·편성에 관한 기준 및 방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5조의2제1항제7호 중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또는 제70조제4항 단서에 따라 지역상품을 소개·판매하는 방송프로 그램을 제작·편성 및 송신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 한다.

제100조제5항 전단 및 후단 중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각각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및 지역상품을 소개·판매하는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편성 및 송신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했 개 정 아 第70條(채널의 구성과 運用) ① 第70條(채널의 구성과 運用) ①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④ 綜合有線放送事業者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역정보 및 放送프로그램안내 와 공지사항등을 製作・編成 및 送信하는 지역채널을 운용 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 다만. 종합유선방송 사업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소상 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 상공인 등이 생산 · 판매하는 지역상품(이하 "지역상품"이라 한다)의 소개와 판매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제작 • 편성하 여 지역채널에서 송신할 수 있 다. ⑤ ~ ⑨ (생 략) ⑤ ~ ⑨ (현행과 같음) <신 설> ⑩ 제4항 단서에 따른 지역상 품의 생산・판매자의 범위와 지역상품의 소개와 판매에 관 한 방송프로그램의 제작・편성 에 관한 기준 및 방법은 과학 제85조의2(금지행위) ① 방송사업
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
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
업자・전송망사업자(이하 "방
송사업자등"이라 한다)는 사업
자 간의 공정한 경쟁 또는 시
청자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저
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이하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
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
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 6. (생략)
- 7.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 문편성을 하는 <u>방송채널사용</u> 사업자가 납품업자에 대하여 방송편성을 조건으로 상품판 매방송의 일자, 시각, 분량 및 제작비용을 불공정하게 결정 ·취소 또는 변경하는 행위

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85조의2(금지행위) ①
 1. ~ 6. (현행과 같음)
·
1. ~ 6. (현행과 같음)
1. ~ 6. (현행과 같음) 7
1. ~ 6. (현행과 같음) 7 <u>방송채널사용사</u>
1. ~ 6. (현행과 같음) 7
1. ~ 6. (현행과 같음) 7 <u>방송채널사용사업자 또는 제70조제4항 단서에 따라 지역상품을 소개·판</u>
1. ~ 6. (현행과 같음) 7

8. (생략)

- ② ~ ⑥ (생 략)
- 第100條(제재조치등) ① ~ ④ (생 략)
 - ⑤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 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 사업자는 허위, 과장 등 시청자 가 오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서 제33조에 따른 심의규정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여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과징금처분 또는 제재조치명령을 받은 경 우 그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의 결정사항전문을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기준 · 방법에 따라 자사(自社)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우편,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해당 상 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품소개 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이 를 7일 이내에 이행하여야 하 며, 그 이행결과를 방송통신위 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8.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第100條(제재조치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5
방송채널사용
사업자 및 지역상품을 소개ㆍ
판매하는 방송프로그램을 제작
•편성 및 송신하는 종합유선
방송사업자 방송사업자
<u>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및</u>

	지역상품을 소개・판매하는 방
	<u>송프로그램을 제작·편성 및</u>
	<u>송신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u> -
⑥ ~ ⑧ (생 략)	⑥ ~ ⑧ (현행과 같음)